

#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1979.03.01.	개정2001.02.07.	개정2012.09.01.
개정1991.02.11.	개정2001.10.16.	개정2013.08.05.
개정1993.08.16.	개정2002.10.22.	개정2014.02.05.
개정1994.08.11.	개정2004.02.02.	개정2015.10.08.
개정1996.02.09.	개정2004.08.23.	개정2017.02.02.
개정1996.10.15.	개정2004.12.22.	개정2017.05.11.
개정1997.02.03.	개정2006.07.05.	개정2018.03.08.
개정1998.04.09.	개정2006.08.14.	개정2018.05.03.
개정1998.08.05.	개정2006.11.06.	개정2018.09.07.
개정1998.09.25.	개정2009.02.06.	개정2019.01.30.
개정1999.12.15.	개정2012.02.01.	개정2019.06.1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거 면학을 장려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학생 대상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외의 장학단체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다.

##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처장, 도서관장, 학보사주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② 장학금의 조성과 관리
- ③ 장학생 선정과 지급금액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장학생 선정

**제7조(지급금액, 선정인원)** ①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선정인원은 매 학기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신입생 장학은 입시정책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② 장학종류에 따른 증빙이 확실한 경우, 장학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납부금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학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③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장학, 봉사장학,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제8조(장학생 종류 및 대상자)

① 복지(저소득층)장학 : 가계곤란자(가족)소득분위 8분위 이하자(한국장학재단 기준) 등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봉사 장학 : 국가나 본 대학에 공로가 있거나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③ 근로 장학 : 학내 특정부서 또는 부설·부속기관에서 업무에 협조하는 자

④ 우수 장학 : 학과 성적우수자 및 우수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⑤ 기타 장학 : 입시정책에 따른 장학 및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⑥ 동 조 ②항, ③항, ④항, ⑤항의 장학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자(한국장학재단 기준)의 경우 ①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지정 기탁 장학 및 제8조 ②, ③항은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성적장학 대상자로서 당해 학기 내 복학, 재입학한 자

3. 제8조 ①, ②, ③, ⑤항은 평균 평점 2.0 미만인 자

4. 성적 미달등의 사유로 졸업 이수학기를 초과한 자(졸업유보자)

5.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8학점) 미만인 자

6. 기타 장학생으로 부적격한 자

③ 직전학기를 재이수하고자 하는 복학생들에 등록에 대해서는 5호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동조 ②항 3호에도 불구하고 가계곤란자 중 학과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결재를 받은 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는 추천조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 내에 장학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 신청자의 학과장은 이 규정 제8조, 제9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세칙에 의거 추천한다.

**제12조(확정)** 위원회는 추천된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13조(수여)** 부위원장은 장학생 명부에 의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해당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4조(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지 1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 8.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 8.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2.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2. 3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산업체 위탁 장학생 중 평균평점  $C^0(2.0)$  미만인자 중 '97학년도 2학년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4.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8.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9.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12.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2.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10.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8조2항은(참사람운영규정 만족자) 2006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06.8.14페이지)

부 칙

이 규정은 2004. 8. 23 부터 시행하며 세부규정 1항의 2항, 5항, 6항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12. 22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제9조의 산업체 위탁생의 이중 장학지급은 2006년 입학생부터 불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7. 5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제8조 1항 14절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 8.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11.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2.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9. 1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9조(제한) ②항 3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8.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2.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5.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3.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5.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6. 10부터 시행한다.

< 별지1 >

## 장학금 지급 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본 대학교 장학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세칙은 장학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단, 이 세칙에 불구하고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선발)** ① 신입학 장학생 선발 및 종류, 금액은 매 학년도 입시 정책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우수 1급, 2급을 포함하여 학과별로 현 재학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지급한다.

③ 모든 장학생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지 않은 성적으로 학과별 추천 및 선발 한다.

④ 삭제

**제4조(이중장학)**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모든 장학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봉사장학, 근로장학, 외부장학금(생활비 명목)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원외)** 정원 외(농어촌, 산업체위탁생, 전문대 이상졸업자)전형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인원조정)** 성적장학생은 재학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지급하나 전체 장학금 예산의 상황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은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총장장학)** 총장 장학금은 별표 규정이 정하는 대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체장학)** 대학의 결정에 따라 산업체근무자에게 산업체위탁생에 준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이중 지급 제외)

**제9조(근로장학)** 야간이 개설된 학생지원센터, 계열 사무실, 도서관, 전산실습실, 어학실, 학과 실습실, 전산정보센터 등에는 필요에 따라 적정 인원을 근로 장학생으로 둘 수 있다.

### 제10조(장학별 선발 기준)

- ① 생활보조장학 : 경제적사정 곤란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시설수용자,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한다.
- ②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 ③ 우애장학 : 가족(형제·자매·남매·부부·부녀·부자·모녀·모자 등)이 당해학기에 재학중이며 해당자 중 1명에게 지급한다.
- ④ 공로장학 : 국가나 본 대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⑤ 동직장학 :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다. 단, 1인 4학기(3년제의 경우 6학기, 4년제의 경우 8학기)에 한하며, 입학금은 납입하여야 한다.
- ⑥ 근로장학 : 학내 특정부서 또는 실습실 등에서 업무에 협조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⑦ 성적우수장학 : 각 학과의 성적우수자 중 학년별 재학인원의 10% 이내인 자 중에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단, 성적우수장학생이 교내 타장학금 수혜로 인해 등록금 전액면제 시 차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 ⑧ 우수인재장학 : 우수인재장학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 ⑨ 면학장학 : 원거리 출신자 중 본 대학 입학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 ⑩ 만학도장학 : 본 대학 입학시 만 3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 ⑪ 산업체장학 : 본 대학 입학시 산업체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 ⑫ 주부·학업권장장학 :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기혼자(남, 여)
- ⑬ 평생교육장학 : 본 대학 입학시 타 대학에서 70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는 제외한다.)
- ⑭ 전공심화장학 :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회수) 삭제

**제12조(국가 및 외부장학)** 한국장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으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무이자 포함)장학금은 본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하며(본 대학 장학 혜택 가능), 다만 등록금의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입학시 입시정책에 의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3조(기타)** 별도로 정하는 장학 등 장학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매 학기초 “장학제도” 를 별도 발표 한다.



별표

[ 장학 제도 ]

명칭	지급 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수능성적장학	1급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1)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매학기 수업료 면제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시 지급
	2급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1) 중 2개영역 평균 4등급 이내	2개 학기 각 1,000,000원	
토의장학	1급 토익700점이상, TOEFL76점이상(IBT기준), JLPT N1급, JPT700점이상, TEPS550이상, HSK5급이상	매학기 수업료 면제	**어학성적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함.
	2급 토익600점이상, TOEFL62점이상(IBT기준), JLPT N2.3급, JPT600점이상, TEPS450이상, HSK4급이상	2학기 각 1,000,000원	
	3급 토익550점이상, TOEFL55점이상(IBT기준), JLPT N4급, JPT550점이상, TEPS350이상, HSK3급이상	1학기 1,000,000원	
우수인재장학	본대학 우수인재 장학규정의 의함	매학기 수업료 전액	어학성적증명서등
우수장학	1급 직전학기 성적 학과별 수석인 자(차순위 승계가능)	1,500,000원	석차증명서
	2급 직전학기 성적 학과별 차석인 자(차순위 승계가능)	1,000,000원	
	3급 우수장학 1,2급을 포함하여 재학인원의 10% 이내	500,000원	
수사정시장학	수사정시모집전형에 지원한 자	600,000원	생활기록부사본
경진대회 장학	1급 전공 관련 전국(전남)기능경기대회1위	입학시 1,800,000원	상장원본, 장학증서
	2급 전공 관련 시도기능경기대회1.2위, 전국기능경기대회 2위, 본대학경진대회 1.2위	입학시 1,500,000원	
	3급 전공관련 전국기능경기경진대회 및 본대학 경진대회 입상자	입학시 1,300,000원	
기능사장학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입학시 100,000원	자격증 사본
평생교육장학	1급 4년제대학 졸업자	입학시150만원, 매학기 70만원	대학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급 전문대졸 및 4년제대학 2년이상수료자		
만학도	만 30세 이상자 입학시		고교생활기록부
주부·학업권장장학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기혼자(남, 여)	입학시 100만원 매학기 50만원	주민등록등본
산업체장학	입학시 산업체(직장인,개인사업)에 근무중인 자 또는 3개월 이상 경력자	입학시 100만원 매학기 50만원 (*최종학기 비면제)	재직증명서 고교생활기록부
군장학	5대대 장병 및 부사관		부대장 추천서
면학장학	다문화가족 본인 및 자녀가 입학할 경우	입학시100만원, 매학기 50만원	관련서류(추천)
우애장학	재학생의 형제, 자매 등 직계존비속 가족이 동시 재학 중인 자	매학기 50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동직장학	본 대학 교직원 및 배우자,자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재직증명서
생활보조장학	1급 기초수급대상자	매학기 700,000원	관련증명서
	2급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 산업재해 직계가족, 사회복지시설수용자, 한부모가정,	매학기 700,000원	관련증명서
근로장학	2급 학보사 편집국장(1명) [2개학기]	학기당 1,000,000원	지도교수 추천서
	3급 학보사 정기자(2명) [2개학기]	학기당 800,000원	지도교수 추천서 해당부서 추천서
	4급 학보사 수습기자(3명) [1개학기]	학기당 400,000원	지도교수 추천서 해당부서 추천서
	4급 학숙관 층장		
공로장학	1급 총학생회 선출직[총학생회장, 부회장(주아)]	수업료 전액 면제	학사운영처장 추천
	2급 학생회 회칙 제8조①항3호	공학계열 : 900,000원 자연과학계열 900,000원 인문사회계열 750,000원	학사운영처장 추천
보훈장학	1급 국가유공자 본인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수업료및입학금면제 증명서(보훈청)
	2급 국가유공자의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대학50%,정부50%)	
동문가족장학	본 대학 졸업생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대상자가 입학 한 자	입학시 30만원 (총장장학9급)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출
농어촌장학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로 입학한 자	입학시 700,000원	주민등록등본
특수교육장학	특수교육대상자(장애1~4급)로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입학한 자	매학기 500,000원	관련증명서
총장특별장학	우리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총장특별장학 기준 참조	총장 추천
통일장학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함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대학50%,정부50%)	관련증명서
전공심화장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입학시	입학시 110만원, 매학기 50만원	관련증명서
배들캠퍼스장학	본 대학 배들캠퍼스에 입학한 자	입학금 및 구업료의 50%	관련증명서

■ 총장특별장학 종류 및 금액

구분	장학금액	지급학기	비고
총장장학 특1급	수업료 면제	입학시 지급	입학시 1회
총장장학 1급	80만원	입학시 지급	교수 추천장학
총장장학 2급	70만원	〃	〃
총장장학 3급	60만원	〃	〃
총장장학 4급	50만원	〃	〃
총장장학 5급	40만원	〃	〃
총장장학 6급	20만원	〃	〃
총장장학 7급	10만원	〃	〃
총장장학 8급	추후결정	2개학기 지급	기숙사 장학
총장장학 9급	30만원	입학시 지급	동문가족장학
총장장학 10급	28만원	4개학기 지급	교수추천
총장장학 11급	26만원	4개학기 지급	〃
총장장학 12급	매학기 50만원	2년제:4개학기 3년제:6개학기	〃
총장장학 13급	35만원	4개학기 지급	〃
총장장학 14급	입학시 : 100만원 2개학기 : 50만원	2년제:3개학기	〃
	입학시 : 100만원 4개학기 : 50만원	3년제:5개학기	〃
총장장학 15급	입학시 : 150만원 3개학기 : 100만원	4개학기 지급	〃
총장장학 16급	20만원	4개학기 지급	〃
총장장학 17급	40만원	2년제:4개학기 3년제:6개학기 4년제:8개학기	〃
외국인장학 1급	입학시 150만원 매학기 : 50만원	매학기 지급	고교연계협약 유학생
외국인장학 2급	입학시 100만원 매학기 : 50만원	매학기 지급	일반외국인 유학생